

“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!”



한국사회복지사업회
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

수신자 : 수신처 참고

(경 유)

제 목 :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기준 안내

1.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로 교육·훈련하는 과목으로 사회복지학문의 핵심이 되는바, 내실있는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 이수기준이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
3. 이에 아래의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미충족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「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」을 충분히 확인 한 후 실습 지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**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** (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 관련 [별표1])

가. 실습기관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·시설, 기관 및 단체

나. 실습지도자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
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

※ 적용사례 ※

[예시 1]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자

[예시 2]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자

[예시 3]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4년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고,
1급으로 승급 후 1년 사회복지 실무경험자

[예시 4]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6년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고,
1급으로 승급 후 6개월 사회복지 실무경력자

다. 실습시간 :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

○ **적용시기**

가. 전문대학·대학교·대학원 재학생 :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

나. 학점은행제(시간제등록·평생교육원) 이수자

: 201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

※ 참고 : 실습 관련 세부사항은 「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」, 「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」 양식은 홈페이지(<http://lic.welfare.net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끝.

한국사회복지사업회장



수신처 : 전국 사회복지학과·사회복지관련학과 및 교육기관

담당자 남가현
협조자

과장 김경화

차장 신용석

사무총장 원명순

회장 조성철

시행 한사협2010-외-0494호 (2010. 9. 6)

접수 (. .)

우 140-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-85 GS한강에클라트 202호 /홈페이지 : <http://welfare.net>

전화 02)786-0845 / 전송 02)786-6524 / 이메일 dotn02@naver.com /공개